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고 병 준 의원)

의 안 번 호	23-76
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3. 6. .

발의자: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 김승수,
신종갑, 채우진, 한선미

1. 제정이유

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,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장수축하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다. 장수축하금 신청안내,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장수축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장수축하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바.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4. 조 례 안 : 불임

5. 예산조치 : 불임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5. 18. ~ 5. 23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
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,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수어르신”이란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수축하금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
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내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
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.

제4조(지급금액)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
에 지급한다.

제5조(신청안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
의 지급대상자에게 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
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신청 및 지급방법)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
는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
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
-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, 주소,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,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-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,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.

제7조(지급 제외)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
2.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

제8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
2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

제9조(대장 등 관리)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. 다만,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 향후 100세 어르신 증가 추이

(단위:명, 천원)

년도별	2023	2024	2025	2026	2027
100세이상 인구수 (100세 도래자)	51명 (25명)	75명 (24명)	95명 (20명)	144명 (49명)	215명 (71명)
소요 비용	51,000	24,000	20,000	49,000	71,000

○ 비용발생 관련 조문

- 제3조(지급대상)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 관내에 3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.
- 제4조(지급금액)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2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인 연평균 43,000천원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2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)에 해당함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이윤미
연 락 처	02-3153-8857